

瑞山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 審查經過

- 가. 提出日字 : 1998. 8. 21
-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 다. 回附日字 : 1998. 8. 21
- 라. 上程日字 : 1998. 8. 28

2. 提案說明要指(提案說明: 稅務課長 安光來)

가. 提案理由

- IMF지원 이후 경기가 침체되어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에 관한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 최근 소값 하락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어, 자가 소비용 도축에 대한 도축세 면제로 축산물 소비를 촉진시켜 농촌경제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임대목적의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대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확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살에 대하여 도축세를 면제토록함.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指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형과세 또는 일부과세로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서산시세감면조례로써,
- 행정자치부장관이 세제 13400-611('98.5.29)호로 지방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허가 하고, 충남도지사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조례개정 선행절차 요건이 갖추어져 있으며,
- 시세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개정하여도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指 : 생략

5. 討 論 : 없었음.

6. 少數意見 : 없었음.

7. 審査結果 : 원안대로 가결

제안번호	제 16 호
의결년월일	1998. 9. 7. (제 회)

서산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8. 8. 21.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
----------	----

제출년월일 : 1998. 8. 7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제안이유

- IMF 지원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 최근 소값 하락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자가 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도축세 면제로 축산물 소비를 촉진시켜 농촌 경제 안정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임대목적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경감(안 제12조제2호).
- 나.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살에 대하여 도축세를 면제(안 제13조의2).

3. 참 고

가. 근거법령

- 지방세법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인 가

- 행정자치부장관의 표준안 (세정 13400-611, 세정 13400-830)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중 “60제곱미터이하인”을 “85제곱미터이하인”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농가의 자가 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제공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3. (생략)</p> <p><신설></p>	<p>3. (현행과 같음)</p> <p><u>제13조의2(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제공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u></p>